

제 4 교시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분배론 : 롤스와 노직

안녕 여러분! 이연호이연호입니다. 예상외로 노직과 롤스에 대한 칼럼 요청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칼럼을 본격적으로 쓰기 이전에, 제 칼럼 전반적인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 칼럼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쉬운 건 굳이 이 칼럼 안 봐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쉬운 내용(여기서 쉬운 내용은 온갖 참고서나 교과서 한번 읽은 사람은 무조건 알 수 밖에 없는 내용을 일컫습니다.)은 간략하게만 서술하고, 심화적인 개념까지 모두 서술하는 것이 칼럼의 목표입니다. 뻔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칼럼은 AtoZ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써둔 칼럼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우선, 기본 내용은 당연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본 교과서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비슷해야죠. 교과서에서 수능문제가 출제될 것인데 제 맘대로 쓰면 어떡합니까. 제 칼럼은 이러한 기본적 내용에다가, 어려운 심화 내용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그 점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 칼럼은 스토리텔링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냥 설명만 툭툭툭 던져 놓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깐요. 어떤 흐름으로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형식으로 최대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암기도 잘 되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내용은 오르비 쪽지로 물어봐주세요. 저 밥 먹고 숨 쉬는 거 다음으로 자주 하는 게 학생분 질문 확인하는 거예요. 바빠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심심성의껏 대답하니까 자주 자주 물어주세요! 아니면 정말 지금 당장 질문 해결이 안 되면 잠을 이루지를 못하겠다.. 꿈에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답답해 미치겠다... 싶으시면 [yhkentlee](#)로 카카오톡 해주세요! ~~~~ 새로운 학생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① 존 롤스(John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 선생님(이하 롤스)은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 원칙과 정의로운 사회가 갖추어야 할 사회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제시합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 자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 다른 지위에 태어난 자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정해진 서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인간의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태초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제시한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Justice as fairness)입니다.

롤스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장막을 쓴 사회 구성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모릅니다. 무지의 장막은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롤스의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 실재했던 상태가 아

니라,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가상적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장막’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롤스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상적인 상태를 ‘원초적인 상태’라고 칭하였고, 이것의 전제를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는 상태로 가정하였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원초적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정신적 능력 등에 대해 무지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여기서의 무관심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다는 의미이지,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재산이나 특혜, 지배권 등 특정 종류의 관심만을 가지는 개인들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헛갈리시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롤스는 무지의 장막을 쓰고 있다고 해서 개개인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롤스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기본 가치’ 즉 기회, 권력, 소득, 부 등이 필요하다는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지의 베일이라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새하얀 백지 상태인간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초적 상황에서 보장되는 원칙들의 특징은 뭘까요? 원초적 상황에서는 본인의 소질, 능력, 지능, 체력도 모를 것이기에(즉 운과 같은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이 될 수 있겠네요.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이러한 무지의 장막에 가려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①제 1원칙: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롤스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 즉 정치적 자유나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등이 제 1원칙에 의거하며 ‘모든 사람에게 균등 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롤스는 아무리 어떤 제도나 법이 효율적일지라도,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위해 인간의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②제 2원칙: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차등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는 불평등이어야 한다.

→ 제 2원칙은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됩니다.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

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롤스는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

면, 롤스는 이러한 제 1원칙, 제 2원칙이 지켜지는 한 결과적인 평등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기본 구조 내에 허용될 수 있는 불평등으로부터 이득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불평등이 없을 때보다 불평등이 있을 때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합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맥락에서,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사회적 우연성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 의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해도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해 재화의 분배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 - XXX!)

이 때문에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 마르크스와는 완전히 다르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소리가 아니고, 최소 수혜자에게도 가능한 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한편 제1원칙은 제2의 원칙에 우선하며, 공정한 기회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합니다. 롤스의 정의 원칙을 살펴보자면,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 가치를 불평등하게 소유하는 독점에서 사회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하여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롤스는 이러한 관점으로 원초적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롤스는 보다 좋은 자질을 타고 났거나 운 좋게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이들은 훌륭한 체제가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한 필수조건일 경우 타인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히 인간에 대한 양심을 고평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겠네요.

롤스는 사회에서 재능 있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재산에 해당하는 재능이 복지에 기여해야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부적 자질 그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적 사실(natural fact)에 불과합니다.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능력을 망각하게 하는 무지의 베일에 덮여 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롤스가 생각하기에, 정의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천부적 자질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롤스는 타고난 능력이 좋고, 노력을 통해 천부적 재능을 발전시킨 사람이 사회적 고위 권력자가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평등은 우연성에 기인한 것이겠지요? 롤스는 정의로운 분배가 우연성, 그리고 선천적 재능과 능력에 보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 사람들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 하는데 합의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합니다. 두 원칙은 운명의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현실 사회에 있어서 사회는 상호의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롤스는 (노직도) 개인이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둘 모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화는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롤스는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은 노직과 완전 다르네요!)

②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권리로서의 정의’

노직 선생님(이하 노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의로운 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권리’로서의 정의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직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롤스의 정의론이 차등 원칙을 통해 개인의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분배 원칙으로서 중요시하기도 했지요.

일단 넘나 어려운 노직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여러분이 머릿속에 새겨놓아야 할 단어는 절대적 재산권입니다. 노직은 정의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이 본인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 인격이나 소유물에 간섭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나의 권리를 상실됩니다. 자유에 대한 권리는, 한 마디로 자기 소유의 권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인데,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의 방식은

1. 최초 취득
2. 자발적 이전(양도)
3. 교정

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①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소유물을 취득할 합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또, ②본인의 노동에 의한 결과를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정의롭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할 경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 행위가 바로 ③ 교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해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방식 중에, 절대로 개인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 지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하나 있네요. 뭘까요? ①번? ②번? 땡! ③번이예요. 거래의 교정 작용을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만의 힘으로 온전히 시행되기는 무척 어렵겠죠.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텐데, 법의 힘이나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합법적으로 시행되기도 어려울테구요. 그래서! 노직은 이러한 교정의 과정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어얼 대로 터치하지 않지만,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최소 국가입니다. 여러분, 개념 공부 하실 때 ‘이거 외때문에 그냥 국가 아니고 굳이 최소국가지?’라고 생각하셨어야 해요. 위와 같이 국가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최소 국가인 것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재분배를 위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지요?! 국가는 부정의한 교환을 교정!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노직은 국가가 자원을 강제로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타인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최소 국가는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야경국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개인의 인

이 칼럼에 대한 저작권은 이연호(yh96911@korea.ac.kr)에 있습니다.

격권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직은 “국가는 불필요하당~~정부가 없는게 킹갓최고다~~~” 라고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비판합니다. 당연하겠죠. 정부와 국가가 없으면 부정의한 거래의 교정이 현실적으로 힘들테니까요. 그래서 노직은 최소국가와 같이 ‘포괄적이지 않은’ 국가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롤스와 같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는 ‘포괄적인 국가’에 반대하여, 노직은 최소국가가 합법적인 형태의 국가라고 주장하며 이런 주장을 통해 최소국가가 정당한 유일한 국가 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공격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의 침범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던지, 경찰과 법정은 시민들 서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던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노직은 최소국가가 이렇듯 ‘사람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직은 최소국가가 사람들을 강제하여 타인을 돕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대충 보시더라도 노직은 평등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직이 ‘불평등’을 선호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재화의 경형화된 분배의 부담에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경형화된 분배에 대해서는 밑에 서술되어 있어요) 자유시장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커다란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예요. 이러한 부의 불평등이 우연히, 또는 자발적인 협동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반대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재분배를 통해, 혹은 사회적 계획을 통해 평등을 이룬다? 이걸 완전히 반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빈부의 격차가 아무리 커도 그 분배는 정의로운 것이죠. 또, 결과적으로 재화의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취득과 양도가 합법적이라면 그 상태는 정의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노직은 완전 냉혈한으로 보이네요. 개인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에는 성공적인 논리가 되겠지만, 아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없어보이니까요. 하지만, 노직은 자신이 아예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노직이 부자에게 여분의 재산을 내놓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곤경을 무시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예요. 노직은 ‘사적인 인류애’를 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노직은 자선을 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선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에는 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텐데,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내용 자체가 까다로운 건 아니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직은 ‘정형적인 이론’과 ‘비정형적인 이론’으로 나누어서 분배 원리를 바라봅니다. 노직은 자신의 소유권리론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직은 적합한 분배 방식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경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에 집중할 뿐이죠. 앞에서 서술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노직은 어떠한 방식으로 교환하든 그 교환이 부정의하지 않다면 완전히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정형적인 분배 기준을 만들게 된다면 개인이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빼앗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노직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절대적 재산권 또한 바람직하게 보호받지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선지가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만 재화를 분배한다.’라는건 아예 틀려먹은 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분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분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까지 노직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노직이 로크적 단서를 계승(로크가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는 것처럼 노직도 자연상태에서 자유나 소유권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칼럼 3페이지 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한 줄 한 줄에 논문과 원전 몇 십 페이지를 눌러 담았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정말 여러 번 읽으시기 바라구요 πππ.. 게시글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가끔적이면 오르비 게시판에 댓글 달아주세요~